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20 (월) 김 영해의원외 5인

나. 회부일자 : 2006. 11. 27(월)

다. 상정일자 : 2006. 12. 5(화)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 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해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군의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므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출생신고 시 신고절차 안내와 신고요령 등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험료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임산부 및 출생아의 등록·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군의 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므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연월일 : 2006년 12월 1일

제 출 자 : 김 영 해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가.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군의 재정 및 인적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화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므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나. 출생신고 시 신고절차 안내와 신고요령 등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보험료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임산부 및 출생아의 등록·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7조 내지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 계 법 령 : 별첨
- 나. 집행부 의견 : 별첨
- 다. 예 산 조 치 : 관계부서와 협의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둘째 아이부터 로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

②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
2. 건강보험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 ①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신고된 임신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보험료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호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일	년 월 일
	출산자수	중 재	분만의료기관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특기사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출생아 와 관계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평 창 군 수 귀 하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등) ①임산부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에 임신 또는 분만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를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출생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